

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선박소유자	① 명칭 또는 성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선박		⑤ 용도		
⑥ 선적항		⑦ 선박번호		
⑧ 총톤수		⑨ 재화중량톤수		
⑩ 선박의 길이		⑪ 항행구역		
⑫ 수검 희망일자				
⑭ 수검 희망장소				
⑮ 비고				
위 선박에 대하여 (방오시스템·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고자 「해양환경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방오시스템 형식승인증서 2. 방오시스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료 3. 방오시스템의 구성성분과 액체화학품분류번호(CAS No.) 4. 방오시스템 검사증서(임시방오시스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별표 35에 따름

(뒤쪽)

수수료 산출내역

항목	산출근거	금액(원)
검사내용	방오시스템검사 · 임시방오시스템검사 (출입검사 회)	
집행지 외 출장여비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민원실) 검토 ↓ 선박출입검사 ↓ 보고서 작성 ↓ 결재 ◀ 방오시스템검사증서 발급		